

다. 진행순서

| 시 간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
| 14:00~14:30(30') | ◦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(안) 발표 | 환경부 |
| 14:30~14:45(15') | ◦ 휴식 | |
| 14:45~15:25(40') | ◦ 토론회 - 좌장: 유승직(숙명여대 교수) - 패널: 유종민(홍익대 교수) 등 | 학계, 산업계, NGO 등 |
| 15:25~15:55(30') | ◦ 질의응답 | |
| 15:55~16:00(5') | ◦ 마무리말씀 | 환경부 |

※ 공청회 일정, 장소, 개최방식 등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

3. 의견제출

- 제출방법 : 공청회 인터넷 중계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출기한 내 아래 주소로 (전자)우편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- 제출처 : (우)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, 666호(환경부 기후경제과) / lsc0128@korea.kr
- 제출기한 : 2020.9.15.~9.17.(우편의 경우 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)

4. 기타 사항

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(안) 공청회 세부계획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)에 게시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156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9월 2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- 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케어콘(이진용), ② (주)칠성건설(이희광)
③ (주)나루기술(오선우), ④ (주)진성테크(전옥)
⑤ (주)오케이기술산업(최영희), ⑥ 에스큐엔지니어링(주)(이래철)

나. 전화번호 : ① 02-477-6849 ② 042-482-3777 ③ 041-855-0596 ④ 061-372-5300
⑤ 062-951-2704 ⑥ 02-2229-5007

2. 명칭 :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한 재알칼리화 및 친환경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한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토목구조물 보수보강(포장 보수제외) /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

<기술의 요지>

신청기술은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한 공법으로서, 먼저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재알칼리화 및 강도를 증진시키고,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인 CO2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멘트 대신 산업부산물인 GGBS(고로슬래그), FA(플라이애시)와 알칼리 자극제로 구성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인 CAAM300을 타설해서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(특히 내산성 및 내황산성)을 확보하고, 시공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 배합에 적합한 타설장비를 개발해서 시공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. 또한 추가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 타설면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이다

<범위>

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 된 콘크리트 표면을 재알칼리화하고, 산업부산물인 GGBS(고로슬래그)와 FA(플라이애시)로 구성된 결합재에 알칼리자극제를 첨가해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 [CAAM300]을 만들고, 이를 이용해서 손상된 단면을 복구한 후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161호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일

국토교통부장관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라 인증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,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을 심의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및 인증취소절차를 규정(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 5 신설)